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3. 9. 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6. ~ 9.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도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위원회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제9조제3항제11호 중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신기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2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가명정보의 안전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태점검”을 “실태점검(사전 실태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64”를 “165”로 하고, 일반직 계 “161”을 “1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4”를 “155”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7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u>11의2. 위원회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u>	<u><삭 제></u>
12. ~ 23. (생략)	12. ~ 23. (현행과 같음)
<u>24.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u>	<u>2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도</u>
<u>제도에 관한 사항</u>	<u>에 관한 사항</u>
25. (생략)	25.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지원과) ① (생략)	제8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의2. 위원회 내 민원제도 개선</u>
	<u>및 민원업무의 총괄</u>
6. ~ 10. (생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9조(개인정보정책국) ① · ② (생략)	제9조(개인정보정책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u>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융복합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u> 12. ~ 17. (생략) <u><신설></u> 18. ~ 22. (생략) <u><신설></u> 제10조(조사조정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 보호 <u>실태점검</u> 및 침해조사 종합계획 수립·총괄 2. ~ 18. (생략)	11. <u>신기술</u>----- ----- ----- ----- 12. ~ 17. (현행과 같음) <u>17의2. 가명정보의 안전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18. ~ 22. (현행과 같음) <u>2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u> 제10조(조사조정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u>실태점검(사전 실태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2. ~ 18.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4</u>	<u>165</u>	+1
•	•	•	
•	•	•	
일반직 계	<u>161</u>	<u>162</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54</u>	<u>155</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2